

## 학생 포상 규정

제정 1994. 7. 25.

제6차 개정 2024. 2. 7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포상대상)**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07.5.14)

**제3조(포상종류)**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이사장상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, 공로상, 우수상 등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05.1.24)

**제4조(포상권자)** 이사장상은 본 대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수여하고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공로상, 우수상은 총장이 수여하며,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은 각 단과대학장이 수여한다. (개정 2005.1.24)

**제5조(결격사유)** 제2조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이 있던 자는 제외한다.

**제6조(이사장상)** 본 상은 **학칙 제2조의 단과대학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중** 4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단, 한의과대학 졸업해당자가 수상할 경우 6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22.7.19., 2024.2.7.)

**제7조(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)** 본 상은 각 단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이사장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단, 한의과대학의 경우 6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22.7.19)

**제8조(학과 학업성적우수상)** 본 상은 각 학과 졸업예정자 중 이사장상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단, 한의학과의 경우 6개년간 학업성적 실점수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22.7.19)

**제9조(공로상)** ① 본교 재학 중 학술연구나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학생자치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22.7.19)

② 본 상의 추천은 각 학장 및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추천한다. (개정 2019.6.25., 2022.4.20)

**제10조(우수상)** 재학기간중 근면, 성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05.1.24)

**제11조(포상방법)** 이사장상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학과 학업성적우수상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상장을 졸업식장에서 수여한다.

**제12조(부상)** 전조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**제13조(포상심사위원회)** ① 학칙 및 본 규정에 의한 학생 포상심사를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2.7.19)

② 포상심사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장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며 학생지원팀장이 간사가 된다. (신설 2022.7.19)

③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(신설 2022.7.19)

④ 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신설 2022.7.19)

[제목개정 2022.7.19]

**제14조(포상 수상자 기록)** 포상 수상자는 소정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, 학생취업지원처장이 기록·관리한다. (개정 2019.06.25., 2022.04.20., 2022.07.19)

[제목개정 2022.7.19]

**제15조(세부사항)**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 포상자는 이 규정에 의해 포상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79, 2005.1.24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529, 2007.5.14)

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5026, 2022.07.19.)

이 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67, 2024.02.07.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